[2019년 3분기] 청렴이야기

마래를 함께너는 장점한 북부교육 실현을 위한

클린타임즈

간추린 청렴 소식

[1] 2019년도 물품연수 실시

-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물품 계약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6월 24일 오후 2시30분 북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과 계약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물품계약 청렴연수'를 실시하고, 6월27일 오후3시에는 관내학교 행정실장과 부장교사, 교복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 ▶ 청렴연수는 대평초등학교 이선영 행정실장이 물품계약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과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강의 하였으며
- ▶ 청렴 소통 간담회에서는 교복과 관련한 계약과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 안연균 교육장은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앞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업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물품계약 연수】

【교복업체와 청렴 간담회】

[2] 2019년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교실 지도·점검 실시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연균)은 여름방학 기간(7.24.~8.30.) 동안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서면점검(61교)과 현장점검(4교) 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은 안전관리 및 강사 선정 절차 준수 여부를 포함한 청렴도 이행시항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3] 시설공사 청렴 간담회 실시

- ▶ 북부교육지원청은 2019. 7월17일(수)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제1회의실(3층)에서 학교시설공사 청렴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공사 중인 학교의 현장대리인 30여명과 시설지원과장 및 관계자(17명)들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함으로써 문제점을 공감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시행중인 학교시설공사의 품 질향상 및 청렴교육도 실시하였다.



【2019년도 시설공사 청렴 간담회】

[4] 하반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자체 연수 실시

- ▶ 북부교육지원청은 9월 9일 오후 2시 제1회의실에서 청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연수를 실시하였다.
-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이고, 외부강의는 사전신고 원칙, 초과사례금 서면신고 「해당 사항 안날로부터 5일 이내 등을 연수 하였으며
- ▶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개념과 유형,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등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 하였다.



【2019년도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연수】

과 감사 지적 사례(현장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 계약업무 처리 부적절

- ▶ ① 2015학년도와 2017학년도 수학여행을 실시하면서 선금지급채권(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지 않고 선금 을 지급하였고.
 - ② 2013~2014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용역 계약 시 인지세 140,000원을 징구하지 않고
 - ③ 2016학년도 5.6학년 수학여행을 위한 차량 계약 시 가격조사나 원가계산 등을 통한 기초금액을 산출 하는 합당한 절차 없이 견적 공고를 올렸으며, 추정 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함에도 S2B시스템의 1인 견 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고, 1개 업체 가 참가하여 제시한 가격으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함 ④ 2013~2017학년도 수학여행 운영 시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수학여행 실시 후 2013 ~ 2015학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고, 7일 이내에 결과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2013 ~ 2014학년도 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인지세법』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부산 광역시교육청)

-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를 위해 증권(또는 보증서) 를 제출 받아야 하며,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 수련활동의 운송 용역은 추정가격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통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함
- 현장체험학습 시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계약방법 등을 심의해야 하며, 실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수립 시 자료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현장체험학습 단체차량 안전점검 업무 소홀

▶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차량 이용 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차량 운송 용역 특수조건에 기재된 차량생산 연도를 확인 하지 않음

■ 관련규정

- ▶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부산 광역시교육청)
- 단체차량 이용 시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점검을 하고 운전자와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청탁금지법 관련 Q&A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초등학교에서 연1회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학생·교직원 뿐만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 입니다.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들 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음. 비록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 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 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차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 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후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직원인 방과후 교사에게 6만원 상당 스카프를 선물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직원인 방과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음.

